포르투갈 - 혼성불일치 확장 법안 초안 의회 제출

■ **2020년 1월 30일 포르투갈 정부는 제3국과의 혼성불일치에 관한 EU 이사회 지침 2017/952를 이행하는 법안 초안 10/XIV를 의회에 제출함[2)]**

○ 해당 법률안은 ATAD2의 조항 내용을 밀접하게 따르고 있으며, 2019년 5월 3일 도입된 ATAD1을 따른 기존 법률 32/2019에서 혼성불일치에 관한 범위를 확장함

■ **본 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규정한 혼성불일치 금지 조항을 제3국과의 계약까지 확대하며, 다음과 같은 혼성불일치 효과에 대해 다룸**

○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서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나, 타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혼성고정사업장 불일치(hybrid PE mismatches) 효과

○ 두 관할국이 금융상품에 대한 취급이나 납세에 대해 다른 조건을 가진 혼성금융상품 불일치(hybrid financial instrument mismatches) 효과

○ 제3국 간 혼성불일치의 효과가 비혼성적인 수단을 통해 EU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전 불일치(imported mismatches) 효과

- 제3국에서 발생하는 혼성불일치 관련 거래에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

○ 금융상품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에게 양도되고, 기초 수익이 하나 이상의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혼성 양도(hybrid transfers) 상황

○ 납세자가 2개국 이상에 거주하여 지불,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한 공제가 복수의 과세 당국에서 가능한 납세 거주지 불일치(tax residency mismatches) 효과

2) Portugal; European Union – Draft bill implementing ATAD 2 submitted to parliament - details (07 Feb. 2020), News IBFD

○ 과세와 관련하여 투명하게 취급되는 혼성 법인이지만, 해당 법인에 대해 최소 50%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거주 관계사들로 인해 발생하는 역혼성 불일치(reverse hybrid mismatches) 효과

■ **역혼성 불일치 효과 관련 조항은 2022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, 이를 제외한 조항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됨**

<자료 수집 및 정리: 박하얀 연구원>